

장애 개념

2020년 3월 30일

1. 장애와 장애인복지	2
2. 장애의 문자적 개념	3
3. WHO의 장애 개념	5
4. 장애에 대한 관점	9
5. 법의 장애 개념	12
6. 손상과 장애	14
7. 시설과 장애	16
8. 상황적 약자	18
9. 지적 장애인?	19

1. 장애와 장애인복지

장애 개념은 ‘장애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입니다. ‘무엇을 가리켜 장애라 하며 장애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겁니다.

이는 ‘장애에 대응하는 사회사업은 어찌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장애 개념이 장애인복지 사회사업의 실재를 규정하는 겁니다. 장애인 복지관의 사업뿐 아니라 장애인시설의 입주자 지원도 그러합니다.

취업 장애에 대한 개념이 취업 지원 방식을 좌우하고 취미활동 장애에 대한 개념이 취미활동 지원 방식을 좌우합니다.

이동 장애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이동 지원 방식이 달라지고 식사 장애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식사 지원 방식이 달라집니다.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시설에서 일하는데 장애 개념이 없거나 모호하면 사회사업 어떻게 할까요?

장애 개념이 뚜렷해야 합니다. 주어와 술어가 호응하는 문장으로 똑떨어지게 이야기하되 실무에 맞게 구체화해야 합니다.

장애 개념으로부터 사업의 목적 목표 방법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가지런히 들어맞아야 합니다. 서로 모순이 없고 따로 놀지 않아야 합니다.

참조 : 복지요결 연구 방법 ‘실용성, 정합성, 정명’

※ 정보원 카페 공동게시판 [5469](#)번 글 ‘재활사회체육운동’ : 장애 개념으로부터 모든 내용이 시종일관 짝을 이루어 가지런히 들어맞음을 볼 수 있습니다.

2. 장애의 문자적 개념

문자 그대로 정의하는 개념입니다.

장애의 障과礙의 뜻이 둘 다 ‘막히다’이니 장애는 한마디로 ‘막힘’이라 할 만합니다. 장애를 막힘으로 바꿔 읽어도 대개 그럼직합니다.

실제로 장애는 어떤 기능이 막힌 상태 또는 어떤 일이 막히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1) 어떤 기능이 막힌 상태

심신의 어떤 기능을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렵거나 불편한 상태입니다.

몸에서 그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나 성분이 손상 결여되어 예컨대 보기 듣기 말하기 걷기 잡기 사고 감정조절 소화 배변 숨쉬기 늑기 따위를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렵거나 불편한 상태입니다.

2) 어떤 일이 막히는 현상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렵거나 불편한 현상입니다.

예컨대 목욕 청소 세탁 용변 취사 식사 물품관리 금전관리 의사소통 이동 여행 산책 학습 쇼핑 취업 취미활동 따위의 일을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렵거나 불편한 현상입니다.

당사자가 환경에 맞지 않거나 환경이 당사자에게 맞지 않아서 또는 일이 당사자나 환경에 맞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어느 쪽이든 장애는 결국 어떤 일이 막히는 현상입니다.

장애를 설명하는 각종 법조문에서도 이런 개념을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조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신체적 정신적 요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신체적·정신적 장애’

이렇게 심신의 어떤 기능이 막힌 상태를 전제하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조 ‘완전하고 실질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

장애인복지법 제2조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

이렇게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어떤 활동이 저해되거나 제약받는 현상 곧 어떤 일이 막히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심신의 어떤 기능이 막힌 상태를 장애라 하는 법도 있고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의 어떤 일이 막히는 현상을 장애라 하는 법도 있습니다.

WHO는 어떤 기능이 막힌 상태와 어떤 일이 막히는 현상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장애를 정의합니다.

In ICF, the term disability is similarly an umbrella term for impairments, activity limitations and participation restrictions.

출처 : [ICF](#) Beginners' guide, 2쪽

요컨대 장애는 어떤 기능이 막힌 상태 또는 어떤 일이 막히는 현상입니다.

막힌 기능을 살리거나 보완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다만 사회사업은 주로 ‘어떤 일이 막히는 현상’에 대응합니다.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렵거나 불편한 문제를 예방 해소 완화 보완 또는 감당 극복하게 돕는 겁니다.

3. WHO의 장애 개념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

1) The model of ICF

Two major conceptual models of disability have been proposed.

① medical model

The medical model views disability as a feature of the person, directly caused by disease, trauma or other health condition, which requires medical care provided in the form of individual treatment by professionals.

Disability, on this model, calls for medical or other treatment or intervention, to 'correct' the problem with the individual.

② social model

The social model of disability, on the other hand, sees disability as a socially created problem and not at all an attribute of an individual.

On the social model, disability demands a political response, since the problem is created by an unaccommodating physical environment brought about by attitudes and other features of the social environment.

On their own, neither model is adequate, although both are partially valid.

Disability is a complex phenomena that is both a problem at the level of a person's body, and a complex and primarily social phenomena.

Disability is always an interaction between features of the person and features of the overall context in which the person lives, but some aspects of disability are almost entirely internal to the person, while another aspect is almost entirely external.

In other words, both medical and social responses are appropriate to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disability; we cannot wholly reject either kind of interven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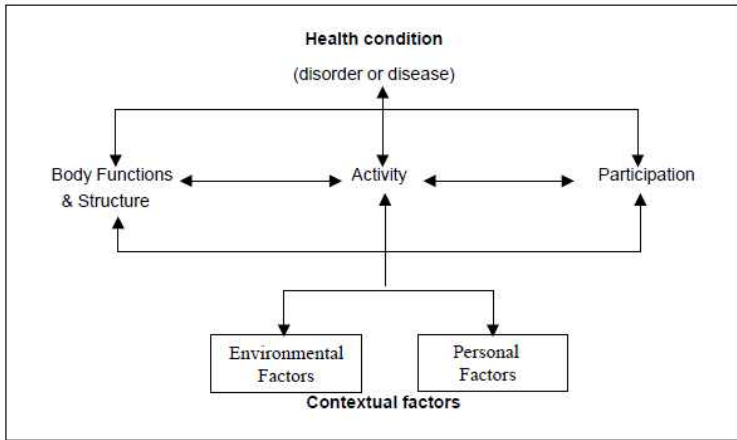
③ bio–psycho–social model

A better model of disability, in short, is one that synthesizes what is true in the medical and social models, without making the mistake each makes in reducing the whole, complex notion of disability to one of its aspects.

This more useful model of disability might be called the biopsychosocial model.

ICF is based on this model, an integration of medical and social. ICF provides, by this synthesis, a coherent view of different perspectives of health: biological, individual and social.

The following diagram is one representation of the model of disability that is the basis for ICF.



2) Concepts of functioning and disability

As the diagram indicates, in ICF disability and functioning are viewed as outcomes of interactions between health conditions (diseases, disorders and injuries) and contextual factors.

Among contextual factors are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s (for example, social attitudes,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legal and social structures, as well as climate, terrain and so forth); and internal personal factors, which include gender, age, coping styles, social background, education, profession, past and current experience, overall behaviour pattern, character and other factors that influence how disability is experienced by the individual.

The diagram identifies the three levels of human functioning classified by ICF: functioning at the level of body or body part, the whole person, and the whole person in a social context.

Disability therefore involves dysfunctioning at one or more of these same levels: impairments, activity limitations and participation restrictions.

3) The formal definitions of these components of ICF are provided in the box below.

- ① Body Functions are physiological functions of body systems (including psychological functions).
- ② Body Structures are anatomical parts of the body such as organs, limbs and their components.
- ③ Impairments are problems in body function or structure such as a significant deviation or loss.
- ④ Activity is the execution of a task or action by an individual.
- ⑤ Participation is involvement in a life situation.
- ⑥ Activity Limitations are difficulties an individual may have in executing activities.
- ⑦ Participation Restrictions are problems an individual may experience in involvement in life situations.
- ⑧ Environmental Factors make up the physical, social and attitudinal environment in which people live and conduct their lives.

출처 : [ICF](#) Beginners' guide, 8~10쪽

WHO의 장애 개념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Disability is impairments in body function or structure, activity limitations and participation restrictions.

번역 : 장애는 '기능이나 구조의 손상, 활동이나 참여의 제약'입니다.

4. 장애에 대한 관점

1) 개인 관점

당사자 쪽 조건 자체를 장애로 보거나 당사자 쪽 조건 때문에 장애를 겪는다고 봅니다.

당사자 쪽 조건을 바꾸거나 대신 해 줍니다.

예컨대 다리가 절단 또는 마비된 상태 자체를 장애로 보거나, 다리가 절단 또는 마비되었기 때문에 이동 장애를 겪는다고 봅니다.

다리를 수술하거나 재활 훈련을 하거나 보장구를 활용하게 돕습니다. 대신 이동하여 복지를 구해다 주거나 복지를 이루어 주기도 합니다.

의료 관점이라고도 합니다.

2) 환경 관점

환경 쪽 조건 때문에 장애를 겪는다고 봅니다.

환경 쪽 조건을 바꾸거나 환경 쪽에서 해 주게 합니다.

예컨대 이동 장애는 환경에 편의시설이 없기 때문에 겪는 문제라고 보고 편의시설을 갖추게 합니다. 환경 쪽에서 이동하여 복지를 전달하거나 복지를 이루어 주거나 대체 복지수단을 제공하게 하기도 합니다.

사회 관점은 여기에 가깝습니다. 사회의 조건은 환경 쪽 조건 가운데 일부입니다.

3) 생태 관점

한쪽 조건 자체를 장애로 보지 않습니다. 한쪽 조건만으로 장애가 성립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컨대 다리가 절단 마비된 상태 자체를 장애로 보지 않습니다. 절단 마비된 다리나 편의시설이 없는 환경 때문에 이동 장애가 생긴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장애는 이쪽과 저쪽이 맞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 겪는 어려움입니다.

이쪽은 당사자의 조건입니다.

손상 결여되었거나 그 사회 여느 사람과 사뭇 다른 ‘심신의 어떤 기능이나 구조’입니다. 사회성과 관계망, 지식과 기술, 부와 지위, 사고방식, 경험과 습관, 성격 따위도 당사자 쪽 조건에 해당합니다.

저쪽은 환경의 조건입니다.

이런저런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의 기능이나 형태, 내용이나 방식 따위입니다.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 기후, 경제 상황 따위도 환경 쪽 조건에 해당합니다.

장애는 이쪽이나 저쪽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쪽에 기인하는 것도 아니고 저쪽 때문에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이쪽과 저쪽이 잘 맞으면 장애를 겪지 않습니다. 이쪽과 저쪽이 맞지 않더라도 무엇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상황이 아니면 장애가 생기지 않습니다.

장애를 당사자와 환경 사이의 생태 현상으로 보는 겁니다.

장애를 생태 현상으로 보면 해결 경로를 여러 갈래로 잡을 수 있습니다. 사람 사안 상황, 처지와 역량, 가용 자원과 기회비용을 헤아려 개입 대상이나 방법, 우선순위를 유연하게 선택 변통할 수 있습니다.

이동 장애라면 예컨대

- ① 한편으로는 당사자 쪽에 개입하여 보장구나 보조기를 활용하게 돕고 한편으로는 환경 쪽에 개입하여 편의시설을 갖추게 합니다.
- ② 둘레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하거나 둘레 사람이 돕게 합니다.
- ③ 그 밖의 다른 강점을 살려 쓰게 합니다.
- ④ 편의시설이나 도와줄 사람이 있는 ‘다른 환경’을 찾아보게 합니다.
- ⑤ 이동이 필요한 그 일에서 이동 장애를 감수하거나 상쇄하고도 남을 다른 가치를 개발하게 합니다. 또는 이동할 필요가 없거나 적은 ‘다른 일’을 찾아보게 합니다.

장애는 어떤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일을 하거나 하고자 할 때 생기는 어려움이므로, 그 사람과 그 환경과 그 일 가운데 어떤 것을 바꾸어 장애를 없애거나 줄이거나 피하거나 상쇄하는 겁니다.

어떤 경로로 개입하든 사회사업은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여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당사자와 지역사회 사이의 장애를 예방 해소 완화 감당 극복하고 더불어 살게 돕는 일입니다.

5. 법의 장애 개념

1)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조 : 장애인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완전하고 실질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장애는 '사회 참여가 저해되는 현상'이며 이는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생긴다는 말입니다. 생태 관점 개념입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의4. 장애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요인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장애는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이며 이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요인으로 생긴다는 말입니다. 생태 관점 개념에 가깝습니다.

3)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 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장애가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가리키는지 생활의 제약을 가리키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신체적·정신적 손상이 생활의 제약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제1항은 장애는 개인의 속성이다 또는 개인의 속성이 장애를 초래한다는 말이고 제2항은 장애는 개인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환경과의 상호작용은커녕 환경 자체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장애를 개인 문제로 치부하거나 개인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어느 쪽이든 다 개인 관점 개념입니다.

※ 법정 장애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장애라는 용어의 개념을 정의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컨대 제1항의 ‘신체적·정신적 장애’, 제2항의 ‘장애의 종류와 기준’에서 장애라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제2항 제1호와 제2호 ‘장애란 ~ 장애를 말한다.’에서도 장애라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복지 급여(benefit)를 받을 사람의 적격성(eligibility)을 판단하는 근거로서 장애의 ‘종류와 기준’을 정했을 뿐입니다.

장애라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지는 않았지만, 두 가지는 분명합니다.

첫째, 이 법에서 장애는 손상 또는 결여된 심신의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장애를 개인의 속성으로 보는 겁니다.

둘째,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생활에서 제약을 받는 자라고 합니다. 생활에서의 제약을 개인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6. 손상과 장애

1) 용어의 혼용

① 약점과 문제

약점은 ‘문제에 취약한 점, 문제를 야기 유지 악화하는 조건’입니다.
약점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약점과 문제를 혼용 통용하곤 합니다.

② 손상과 장애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손상은 ‘장애에 취약한 점, 장애를 야기 유지 악
화하는 조건’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손상 자체가 장애는 아니지만, 손상과 장애를 혼
용 통용하곤 합니다.

2) 손상이 장애의 필요조건?

① 흔히 심신의 어떤 기능이 손상된 사람이 겪는 어려움 또는 심신의
어떤 기능이 손상된 상태를 장애라 합니다.

협의를 장애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에서 손상은 장애의 필
요조건 내지 충분조건입니다. 손상이 있어야 장애라 하고, 손상이 있
으면 장애라 합니다.

② 다만 엄밀히 말해서 장애는 당사자와 환경이 맞지 않거나 당사자의
내부 요소들(예: 욕구와 역량)이 서로 맞지 않아서 어떤 일을 할 수 없
거나 하기 어렵거나 불편한 현상입니다.

손상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장애입니다.

광의의 장애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에서 손상은 장애의 충
분조건은커녕 필요조건도 아닙니다.

3) 당사자 쪽 조건을 손상이라는 말로 포괄할 수 없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와 관련하여 당사자 쪽 조건을 이렇게 표현하곤 하는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이동 장애를 겪는 당사자 쪽 조건은 다양합니다.

다리가 절단 또는 마비된 사람, 눈을 다쳤거나 시력이 약해진 사람뿐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없거나 시력이 약한 사람도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없거나 부족한 것은 ‘손상’이라 할 수 없습니다.

교통 표지의 특정 용어를 모르는 사람, 글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 외국인, 차가 없는 사람도 이동 장애를 겪을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조건을 가리켜 ‘손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손상되지 않았어도 장애라 하거나 장애인으로 보는 경우는 또 있습니다.

예컨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지체장애인’ 가운데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은 손상되었다 하기 어렵습니다. 여느 사람과 다르다 할 일입니다.

동 시행령의 ‘지적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지적 기능은 손상 결여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지적 기능은 나름대로 작동합니다. 여느 사람과 다를 뿐입니다.

이러므로 이 글에서는 장애 관련 당사자 쪽 조건을 예시할 때 ‘심신의 어떤 기능이나 구조 따위가 손상 결여되었거나 그 사회의 여느 사람과 사뭇 다른 상태’라고 합니다.

7. 시설과 장애

1) 시설에서 흔히 겪는 장애

취사 장애, 요리 장애, 설거지 장애, 세탁 장애, 청소 장애, 물품·돈·일정 관리 장애, 학습 장애, 학교생활 장애, 취업 장애, 직장생활 장애, 의사소통 장애, 이동 장애, 거주·이전 장애, 여행 장애, 쇼핑 장애, 산책 장애, 취미활동 장애, 정치활동 장애, 인간관계 장애, 사람구실 장애...

시설 입주자가 흔히 이런 장애를 겪곤 합니다.

시설 밖에서 예컨대 취사 요리 설거지 세탁 청소 따위를 할 수 있었고 해 오던 사람도 어떤 시설에 입주하면 이런 일에 장애를 겪습니다.

어떤 시설에서는 위에 예시한 이런저런 장애를 겪지 않거나 덜 겪습니다. 할 수 없었거나 해 보지 못한 일이라도 시설의 지원으로 할 수 있고 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처럼 시설 입주자가 겪는 장애는 당사자의 기능이나 시설 밖의 환경보다 시설이 더 좌우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지원 방식 또는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는 부작용이 시설 입주자가 겪는 장애의 주요인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시설 입주자가 겪는 장애는 상당 부분 시설에서 겪는 장애 곧 시설의 어떤 상황 속에서 겪는 어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2) 왜 그럴까요?

어떤 시설에 입주하면

취사 장애, 요리 장애, 설거지 장애, 세탁 장애, 청소 장애, 물품·돈·일정 관리 장애 따위의 이런저런 장애를 겪곤 하는데…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시설 입주 전에는 할 수 있었고 해 오던 일인데 시설에 입주하면 못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력과 예산 때문에, 인력과 예산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람 자체를 장애인으로 보기 때문은 아닐까요?

상황적 약자 개념이 없거나 그런 의식이 약하여 ‘항시 약자’인 것처럼 온갖 일에 개입 보호 관리하려 드는 데서 생기는 문제는 아닐까요? 약자가 아닌 상황, 그런 일까지 도와주려는 데서 생기는 문제 아닐까요?

※ 일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시설에 들어 삽니다.

다만 모든 입주자가 모든 일에 항상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입주자마다 다르고 같은 입주자라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저마다 각각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도움이 얼마쯤 필요할 뿐입니다.

다른 상황에서도 그런 것처럼, 그 사람 자체가 약자인 것처럼, 장애인인 것처럼, 종합 대상자인 것처럼, 온갖 일에 도와주려 하거나 지도 교육 보호 관리하려 들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성인은 더욱 그러합니다. 당사자의 동의나 요청이 없다면 더욱 삼갈 일입니다.

8. 상황적 약자

장애는 어떤 사람과 환경이 맞지 않는 어떤 상황의 문제입니다.

예컨대 이동 장애는 어떤 사람이 건축물 도로 교통수단 안내표지 따위가 그 사람과 맞지 않는 이동 상황에서 겪는 어려움입니다.

이와 같이 장애는 이쪽과 저쪽 사이의 문제입니다. 한쪽 조건에 붙여 쓸 말이 아닙니다. ‘지체 장애’니 ‘지적 장애’니 할 게 아닙니다.

장애는 상황적 현상이지 사람의 속성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붙여 쓸 말이 아닙니다. 예컨대 ‘지적 장애인’이라 할 게 아닙니다.

그 사회 여느 사람에 비해 지적으로 약하거나 불리한 쪽에 속하는 사람, ‘지적 약자’라 함이 실상에 가깝습니다. 약하거나 불리한 상황 ‘그때 그 일에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지적 약자는 학습 취업 의사소통 따위의 상황에서 장애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장애는 약하거나 불리한 상황 ‘그때 그 일에서’ 있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지적 장애인이라 하면, 장애가 그 사람의 고유한 속성이고 그 사람의 문제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사람 자체를 그렇게 보고 그렇게 대하기 쉽습니다. 장애가 있는 상황 ‘그때 그 일에서’ 필요한 만큼만 아니라 장애가 없는 상황 ‘다른 때 다른 일까지’ 필요 이상으로 도와주기 쉽습니다.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를 겪는 상황 ‘그때 그 일에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흔히 ‘심신의 어떤 기능이 손상 결여된 사람’을 장애인이라 하지만, 사회사업은 그런 사람을 장애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상에 장애인인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장애를 겪는 상황적 약자가 있을 뿐입니다.

9. 지적 장애인?

사회복지정보원 카페 복지요결 게시판 513번 글입니다. 서울대학교 복지요결 학습 모임에서 나온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은 “지적 장애인을 지적 약자로 부르는 이유?”입니다.

1) 생태 관점에서 보면

문제는 이쪽과 저쪽 사이의 좋지 않은 생태 현상, 곧 이쪽과 저쪽이 맞지 않아서 생기는 불편 고통 갈등 같은 어려움입니다.

한쪽 조건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사자와 환경 사이의 생태 현상입니다. 어떤 상황 ‘그때 그 일에서’ 겪는 상황적 어려움입니다.

한쪽 조건 자체가 장애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다리 기능이 손상 결여되었다고 ‘이동 장애’가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이동 장애는 다리 기능이 손상 결여된 사람이 그 사람과 맞지 않는 이동 환경이나 이동 과업을 만날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환경이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았다고 이동 장애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환경과 맞지 않는 사람이나 과업을 만날 때 성립하는 겁니다.

요컨대 장애는 당사자든 환경이든 한쪽 조건에 붙일 말이 아닙니다.

‘장애’는 지능이나 신체 상태 같은 당사자 쪽 조건에 붙여 쓸 수 없습니다. ‘지적 장애’니 ‘지체 장애’니 할 게 아닙니다.

불인다면 이동 장애, 학습 장애, 의사소통 장애, 식사 장애, 취업 장애, 독서 장애와 같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 일이나 붙일 수 있습니다.

2) 장애인인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기능이 손상 결여된 상태와 같은 당사자 쪽 조건 자체를 가리켜 사람을 무슨 장애인이라 할 게 아닙니다.

어떤 기능이 손상 결여된 사람은 그 사회 여느 사람에 비해 약하거나 불리한 상황을 만나기 쉽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저런 장애를 겪곤 하는데 그렇다고 그런 사람 자체를 장애인이라 함은 부당합니다.

그 상황 ‘그때 그 일에서의’ 장애로써 그 사람 자체를 장애인이라 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컨대 이동 지원 사업의 대상자는 어떤 환경에서 이동하는 데 장애를 겪는 사람입니다.

지체 장애인이나 시각 장애인이라 함은 물론이고 이동 장애인이라 함도 부적절합니다. 다른 환경에서는 이동 장애를 겪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동 장애는 어떤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이동할 때 생기는 상황적 현상이지 그 사람의 속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성 남성 혹은 백인은 당사자의 속성을 일컫는 말입니다. 아동 청소년 노인도 당사자의 속성에 가깝습니다.

여성인 사람, 남성인 사람, 흑인인 사람, 백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노인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인 사람은 없습니다.

장애는 당사자의 속성이 아니라 상황적 현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가리켜 ‘장애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3) 지적 장애인?

지적 기능이 그 사회 여느 사람과 다를 뿐입니다. 지적 기능 자체에 장애가 있는 건 아닙니다.

지적 능력이 그 사회의 어떤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모든 상황에서 항상 장애를 겪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회 여느 사람에 비해 지적으로 약하거나 불리한 상황을 만나기 쉽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저런 장애를 겪을 수 있을 뿐입니다.

예컨대 그 사람과 맞지 않는 학습 환경이나 학습 과제를 만나면 학습 장애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곧 학습 장애인은 아닙니다. 다른 학습 환경이나 학습 과제를 만나면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적 장애인이라 함은 아예 말이 되지 않습니다.

환경이나 과업을 전제하지 않고 당사자의 지적 기능 자체에 ‘장애’가 있다는 뜻 ‘지적 장애인’이라 함은 온당치 않습니다.

그 사회 여느 사람에 비해 지적으로 약하거나 불리한 쪽에 속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적 약자’라 하는 겁니다.

다만 아직은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아주 쓰지 않고 말하기가 불편합니다. 특히 ‘장애인복지’나 ‘장애인시설’처럼 대상을 총칭할 때 그러합니다. 언젠가 장애인이라 하지 않고도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